

확보해 오면 그때 가서 납부 취소처리를 해주겠다는 반 떠넘기기식의 주문을 요구해왔습니다.

사실 아직 컴퓨터도 없고, 인터넷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여 우선 인근의 몇몇 시·구청의 세무 담당 실무자들을 방문하여 질문을 해보았습니다만 재판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 그 판결문의 주문이행을 조건으로 취득세 납부를 부과취소해 주고 있고 사실상 처리를 못해 줄 근거는 불명료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

따라서 질의 드리옵건대 해당구청의 담당관들이 처리하여 주고 싶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소신있는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며, 반대로 본 질의자는 하루가 급한 사정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의 명료한 근거의 제시를 앙망하고 있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.

회 신

귀문의 경우 당초에 적법하게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에서 채권·채무 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.

(세정 13407-879, 2000. 7. 8)

6. 자기 부동산을 경락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

【질 의】

본인은 10여년전 부동산을 구입한 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적법하게 등기 경료하였습니다.

그후 몇 년이 지난 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그 제3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본인소유의 부동산과 제3자의 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, 본인이 당초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과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낙찰을 보게 되어 등기를 하게 될 경우, 등록세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한계(예, 당초 본인소유였던 부동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, 제3자의 부동산 취